

수원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1031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10316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5336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장지혜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8. 30.

판결선고 2022. 10.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5336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C과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7. 8.
3. 접수 제10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이명선, 판사 이나경